

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김광수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실효성 있고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보다 완성도 높은 시행계획의 수립이 필요합니다.

그러나 현행 조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시행 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, 그 추진실적의 평가나 활용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.

따라서 직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·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기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이를 준수

하도록 함으로써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

□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
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직전 수립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·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며,

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.

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